

노동부 '97.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계획

노동부는 '97. 산업재해감소 목표재해율 0.74%, 사망만인율 1.99 달성을 위해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산재취약부문 중점관리,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97.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 세부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96. 사업평가와 '97. 전망 및 추진과제

1) '96. 사업평가

■ 긍정적 측면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의 수립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 재해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안전문화축전대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하여 전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지도, 안전·보건대행 국고보조 및 용자 등 지원사업이 재해감소에 크게 기여

■ 반성

- 산재예방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목표관리 미흡
- 산재통계 미비로 취약요인별 예방대책 수

립에 애로

- 기업 자율재해예방활동 정착을 위한 노·사의 참여노력 부족
- 측정·검진 부실방지 및 신종직업병에 대한 대책 소홀
- 안전문화운동이 행사위주로 전개되어 범정부적·체계적 추진 미흡
- 정부,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간의 역할분담의 효율성 결여

2) '97. 전망 및 추진과제

■ 전 망

- SOC 투자 증가, 건물의 고층화, 시설노후화 및 노동력 고령화 등 산재요인 증대로 산재감소추세 둔화 예상
- 근골격계 장애, 심·혈관질환, 중금속중독 등 신종직업병 증가와 산업보건관리의 사각지대인 건설일용 등 비정규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선진화계획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재예방경의대회, 협력업체 지원 등 자율재해예방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 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재해예방활동 참여로 산재예방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으나,
 -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 및 참여욕구 증대로 안전보건문제가 노·사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추진과제

- 지방노동관서, 공단 등 기관별·사업장별 산재감소목표 관리(재해율·사망만인율)
- 업종별·원인별·기인물별 산재 및 직업병 취약분야 집중 지원·지도
- 하위법령 개정 등 안전·보건규제의 합리적 정비
- 노·사 공동참여 및 자율예방활동 촉진
- 안전보건교육·홍보 및 민간단체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 안전보건기준 및 기술의 국제수준화
- 정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2. 산업재해 감소목표 관리

1) 목표

- 총괄 목표 : 재해율 0.74%, 사망만인율 1.99 달성
 - 지방노동관서와 공단 등 각 기관의 모든 사업을 산재 감소목표 달성과 연계

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기본방향

- 지방노동관서, 공단 등 각 기관은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목표를 설정
- 사업장 지도·점검 등 모든 사업을 자체 산재 감소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 사업시행 후에는 반드시 산재감소 기여 효과를 분석·평가
- 산재취약사업장을 목표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사업장이 산재 감소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 지방노동관서, 공단 등 각 기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

3) 목표관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감독관 및 지도원 직원 1인당 20~30개소를 선정
- 공정률이 70% 미만인 건설현장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장 중
 -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건설업체의 현장
 - '96년도에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현장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지도 원장이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 '96. 재해율 또는 재해자수가 '95년도 보다 증가한 사업장
 - '96.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96년도에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96년도에 광업의 진폐를 제외한 직업병이 1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지도 원장이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4) 목표관리방법

① 지방노동관서

- 지도 주기 및 내용
 - 월 1회로 하되, 격월로 현장지도와 전화 등을 통한 확인지도 병행(현장지도 → 확인지도 → 현장지도 → ...)
 - 추락·전도·낙하·비래·붕괴 등 재래형 재해예방에 우선
- 관리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대상 현장별로 매월 재해발생현황을 파악, 이를 기준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분석(1/4분기는 분기별로 평가)하여 부진시에는 지도수준 강화 등 보완책 강구
 - 일단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 현장으로 대체
 - 작업이 2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 공정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②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 지도사업장별 산재 감소목표 설정 및 산재감소를 위한 지도계획 수립('97. 1)
 - 월별, 사업장별 실적 평가 및 보완조치
- 각 기관은 매월 지방노동관서에 실적 보고

- 산재 감소실적 부진시 지방노동관서는 1차 경고하고, 계속부진시 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③ 산재예방기관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방법

- 지방노동관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됨
- 협의회는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내 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노·사단체 지역본부 또는 지부, 안전·보건협회 지부 또는 지회,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직장의료보험조합,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

○ 운영

-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협의회 구성원 전체회의 또는 사안별로서관기관·단체만 회의소집 가능

④ 산재 감소목표 관리계획 작성·제출

- 보고사항 : 각 기관별 목표관리계획
- 보고기관 및 제출처
 - 지방노동관서 → 노동부(안전정책과)
 - 공단지도원 → 공단본부
 -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 지방노동관서

3. 노사공동책임하의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위원회 설치 지도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현행 동일
-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 : 노사동

- 수 5인 이내
-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사업장별 자체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시행지도
- 2)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강화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지도
 - 선임대상 사업장 파악 및 현황 관리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수행 지도·감독 강화
 - 안전·보건관리자 지도, 조안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이행 지도
-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보장
- 4)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등록 및 육성
 - 안전보건 컨설팅업 활성화 방안마련
- 5) 기업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6) 위험상황신고실 운영 내실화
- 7)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설치 권장
- 8)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사업 지원
- 9) 「산재예방 협력업체와 함께 합시다」 캠페인 확산 지도
- 10) 공동재해예방활동 지도
 -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11) 표준안전관리비 적용대상 확대 및 편성기준 개발 보급

4. 산업재해 취약부문 중점지도 지원

- 1)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안전인증 마크제(S마크제) 시행
 - 자기결함시정제(Recall) 도입 시행
 - 자체검사 및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내실화
 -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및 작업환경시설 업체 지원
- 2) 중소기업 중점지원
 -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국고지원 확대
 - 안전·보건시설 개선 지원
 - 안전·보건기술 상담센터 설치 및 무료상담
- 3) 산재취약 요인별 집중지도 감독
 - 안전·보건진단 명령(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 50인 이상)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 중대재해 발생우려사업장 안전점검
 - 3대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일제점검
 - 해빙기 : 97. 2.17~3.12(1,000개소)
 - 장마철 : 97. 6. 2~6.30(1,500개소)
 - 동절기 : 97.11.17~12.9(1,000개소)
 - 합동안전 패트롤반 운영
 - 지하철, 고속철도 및 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현장에 대한 등급 분류 관리
 -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적색, 황색, 청색 3등급으로 구분, 차등관리
 - 적색사업장에 대해 1월 이내 특별점검 실시 및 중점관리

5. 추락, 낙하, 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 1)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

- 가설기자재 사용실태 조사
- 가설기자재 사용건설현장 중 공사 종류별 및 사용가설기자재별로 10개소
- 가설기자재 검정대상품목 확대 : 19종 → 30종
- 공정별 안전설계지도서 작성 의무화 추진
- 가설기자재 재사용기준 제정
- 거푸집 등 가시설의 안전작업모델 개발·보급
- 가설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지도
 - 미검정 가설기자재 판매·사용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및 확인 내실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전문가 참여 기준 설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와의 중복사항 배제 추진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 건설현장 취약시기별 점검시 안전공단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시 사업주 의법 조치

3)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및 조치

- 조사대상 : 도급순위 700대 건설업체의 '96년도 재해현황
- 조사기간 : '97. 3월~5월
- 조사방법
 - 건설업체별 재해자수 조사
 - 재해통계자료 출력 및 지방관서 조사자료와 대조 확인
 - 하도급업체(인정승인 및 자체 발주)의 재해 및 전건설업체 사망재해현황 조사

- 및 보고
 - 건설업체별 공사실적액 조사
 -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에 건설업체별 공사실적액 조회 및 확인
- 조사결과 발표 : '97. 6
- 조사결과 조치
 - 재해율이 양호한 업체는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업체는 합동 안전패트를 점검대상에 포함·지도
 -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감점 : ±5
 - 도급한도액 감액 요청(최고 5%), 우수시공업체 지정 금지 등

4) 지역별·업체별 건설공사협의체 구성

- 구성방법
 - 지역별 협의체 : 신공항,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포함) 등 건설현장 소장
 - 동종공사별 협의체 : 지하철, 고속전철,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건설현장 소장
- 구성시기 : '97. 3월중
- 구성 및 지원사항
 -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지역별 또는 동종공사별 해당 현장의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구성하고
 - 협의체 구성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공단 및 재해예방단체 등과 협조하여 재해예방자료, 교육자료 및 교육강사 지원 등의 조치
- 운영방법
 -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협의체회의 개최 (일정 및 시간은 협의체 회원간 협의·

결정)

- ※ 회의장소는 가급적 협의체 회원 현장 상 황실을 이용하고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토의과제로 선정하여 운영 및 현장답사 실시
 - 협의체회원 상호간의 안전순찰 실시 및 각종 정보교류
 - 우수현장 견학 실시 등

5) 대형사고 건설업체 제재

- 대상 :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업체
- 제재방법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 주공사 : 해당 발주기관의 장에게 4~12 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요청
 - 민간발주공사 : 건설업법에 의한 영업정 지 등 요청
- 지방노동관서장은 동시에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시 공단 등 전문가와 합동조사 하여 재해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수사 결과를 본부에 보고

6) "종합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준비

- 독일, EU,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법령 및 적용실태 조사('97. 6)
 - 노동부, 건교부, 공단 및 건설업체 등 관계자 5~7명으로 해외실태조사반 구 성
- 국내실태 조사('97. 7) 및 법제화를 위한 기본안 마련('97. 8)
- ※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계획 별도수립시행

6.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보호

- 깨끗한 작업환경 만들기 운동
- 작업환경 측정의 내실화
- 건강진단 실시 지도
- 검진 미 실시 사업장 조치
- 직업병 예방활동 강화
- 건설 일용 및 용역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화
- 근로자 건강상담 내실화
- 근로자 건강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7. 안전문화 확산 및 민간역할제고

1)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 국민 안전의 날 및 국민안전훈장 제정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안전에 대한 시민고발의식 정착유도
- 안전점검 설명제 확행
- 안전운동 시민단체 육성지원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2) 산업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강화
- 사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도
- 안전작업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이행 지도
- 산업주 안전경영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술 및 제도의 선진화

3) 산업안전 보건제도의 선진화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 정비
- 민간합동 산업안전보건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 운영
- 산업재해통계 제도 개선 및 산재 은폐 근 절
-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지도감독능력 제고